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77
----------	-----

2016. 04. 27.(수)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이 종 욱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16년 04월 18일

다. 회부일자: 2016년 04월 19일

라. 상정일자: 2016년 04월 27일

(제34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이종욱 의원)

### 가. 제안이유

충청북도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의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의식 함양과 실질적인 위기대처능력 증진,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교육안전”, “교육활동 참여자”, “안전교육” 등 이 조례에서 사용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2) 교육안전이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규정함(안 제3조)
- 3) 교육안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4) 교육안전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
- 5) 해마다 교육안전 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8조)
- 6)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 7)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이 취해서 할 교육안전사고 대응·조치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8)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제 13조)
- 9)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10)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학부모, 지역주민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소재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2013년 공주사대부고 해병대 캠프사고, 2014년 경주마리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세월호 사고 등 안전에 대한 기본과 원칙이 실종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희생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한 교육환경 확보를 위한 제도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 제정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 안 제6조에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 문화 진흥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고,
-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교육안전에 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 안전사고 대응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실질적인 안전교육 시행의 필요성과 안전의식 생활화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고 법령에 의한 안전교육 실시의무 시행을 철저히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교육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 제 11조부터 안 제13조의 규정은 안전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 수립 등에 대해 심의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체계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높여 안전교육을 실제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라 사료됨.
- 또한 안 제15조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학부모·지역단체 등과의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규정은 교육안전 확보를 위한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협력체계 구축과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사항이 시행규칙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라 충청북도 관할 교육기관에서의 안전교육 활성화와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안전”이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이하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 한다)가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육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3.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4. “안전문화”란 안전에 관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행동양식 등을 말한다.
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안전의 일반원칙)** ① 교육안전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②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안전할 권리는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육안전의 범위)** ① 이 조례의 교육안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활동 안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에서의 안전
2. 생활안전: 학교폭력으로부터의 안전, 돌봄교실·기숙생활에서의 안전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안전
3. 현장체험학습안전: 수학여행과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
4. 시설안전: 학교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안전
5. 교통안전: 등하교 시 또는 교육활동 중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안전
6. 보건안전: 학교의 보건 및 환경위생,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관련된 안전
7. 급식안전: 학교급식의 시설, 설비, 식재료, 조리, 식중독 사고 등과 관련된 안전
8. 교육환경 안전: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의 안전

**제6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예방교육과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교육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안전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와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1. 교육안전 기본방향 및 추진 계획
2. 교육안전 관리체계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안전 관련 제반 법령에서 정하는 이행 사항
4. 교육기관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 및 확인·평가에 관한 사항
5.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 안전 시행계획을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교육안전 시행계획을 자체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의 실시)** ① 교육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안전교육은 재난 등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습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 구성원은 안전교육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안전 사고의 대응과 조치)** ① 교육안전사고 발생 시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조치하여야 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분장과 대처방안을 제8조의 교육안전시행계획에 포함시키고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교육안전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교육안전 강화를 위한 조사, 연구 및 안전교육프로그램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관리국장과 교육안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충청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학부모
3. 안전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안전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한다.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장은 학부모, 지역주민, 유관기관 및 단체와 교육안전 관련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발췌

## ▣ 교육기본법

제17조5(안전사고 예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안팎의 안전사고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 운영의 기본 지침에 관한 사항
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대비 훈련 등 학교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학교시설 안전점검·관리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5. 학교 안전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4조의2에 따른 학교 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 계획(이하 “학교계획”이라 한다)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교육감은 매년 해당 연도의 학교계획 및 지난해의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3(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 ① 교육부장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교시설을 안전하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재난대비 훈련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여 실시하되,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거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교육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2(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 단체에 대한 지원)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이 조에서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① 학교장은 매학기 시작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기 전까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확인할 수 있다.

1. 학교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이용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교육활동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계획
  5.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활동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② 학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매학기가 시작되는 전날까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말한다)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대책을 마련, 점검·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전날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② 삭제<2015.7.21.>

-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 시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등록) ①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